

난민, 망명 신청자, 특별 이민비자(SIV) 소지자를 위한 긴급 면허 발급 절차

소 비자보호국(DCA)과 관련 위원회 및 부서는 회계사 의사, 경비원, 건설업자, 묘지 관리자,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과 직종의 면허 발급 및 면허 소지자 규제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2021년 1월 1일부로 다음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개인은 본인 직종과 관련된 DCA 위원회 또는 부서의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미국 법전 제8조 1157절의 규정에 따른 난민
- 미국법전 제8조 1157절의 규정에 따라 미 국무부 장관,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미 법무장관이 승인한 망명자
- 공법 110-181의 1244절, 공법 109-163 또는 공법 111-8의 F부, 제6조 602(b)절에 따라 신분이 부여된 특별이민비자 소지자.

긴급 면허 발급을 위해 신청서 패키지 제출 시 신청자는 난민, 망명자 또는 특별이민비자 상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증빙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I-94 양식, 입국/출국 기록, "RE"(난민), "AY"(망명자) 또는 기타 난민 또는 망명자를 지정하는 정보가 표시된 입국 허가 분류 코드.

- "SI" 또는 "SQ" 분류 코드가 포함된 특별이민비자
- 일반적으로 '그린 카드'라고 하는 영주권(I-551 양식), 난민 또는 망명자로 입국 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카테고리 지정된 경우.
- 관할 법원의 명령 또는 신청자가 긴급 면허 발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증빙 서류.

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 검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긴급 면허 발급 절차는 면허 또는 자격증 발급을 보장하지 않으나 발급 절차가 신속히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해당 직업의 **면허 발급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refugee@dca.ca.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DCA의 긴급 면허 발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 영어 외의 언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어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DCA 수신자 부담 전화 (833) 498-2006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.**

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국(CDSS)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난민, 망명자, 특별이민비자 소지자 및 기타 자격 요건 충족자가 캘리포니아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CDS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.cdss.ca.gov/refugee-servic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